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조성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안 10524 번 호

제출연월일: 2025. 5. 15. 부

제 출 자:정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과도한 형벌규정으로 인한 민간 경제활동의 어려움을 경감하기 위하여 기초연구구역 및 산업구역의 입주승인을 받은 자가 변경승인을 받지 아 니하고 승인받은 사항 중 중요한 사항을 변경한 경우 종전에는 이에 대 한 시정명령의 이행 여부와 상관없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 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였으나 앞으로는 해당 위반행위에 대한 과학기 술정보통신부장관의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에만 형벌에 처하 도록 하고, 외국인전용 약국 개설자가 외국인전용 약국의 표시를 하지 아니한 경우 종전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 하도록 하였으나 앞으로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려는 것임.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조성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조성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0조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4항을 삭제한다.

-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1. 제12조의4제1항을 위반하여 입주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입주한 자
- 2. 제12조의4제2항을 위반하여 승인받지 아니하고 입주 승인사항을 변경한 자로서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제52조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제3항 및 제4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4항(종전의 제3항) 중 "제1항 및 제2항"을 "제1항부터 제3항까지"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을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또는 보건복지부장관"으로 한다.
 - ② 제44조제8항을 위반하여 외국인전용 약국의 표시를 하지 아니한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벌칙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의 위반행위에 대하여 벌칙을 적용할 때에는 제50조제3항 및 제4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신 · 구조문대비표

아 혂 개 정 제50조(벌칙) ① • ② (생 럌) 제50조(벌칙) ① • ② (현행과 같 음) ③ 제12조의4를 위반하여 입주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입주한 해당하는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자 또는 승인받지 아니하고 입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 주 승인사항을 변경한 자는 2년 한다.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 1. 제12조의4제1항을 위반하여 의 벌금에 처한다. 입주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입주한 자 2. 제12조의4제2항을 위반하여 승인받지 아니하고 입주 승인 사항을 변경한 자로서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삭 제> ④ 제44조제8항을 위반하여 외 국인전용 약국의 표시를 하지 아니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 한다. 제52조(과태료) ① (생 략) 제52조(과태료) ① (현행과 같음) ② 제44조제8항을 위반하여 외 <신 설> 국인전용 약국의 표시를 하지 아니한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 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 ② (생략)
-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과태 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u>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u> 이 부과·징수한다.
- ③ (현행 제2항과 같음)
- <u>④</u> 제1항부터 제3항까지-----
 - _____
 - ---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또는 보건복지부장관-----

-----.